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09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19.

발 의 자 : 정점식 · 인요한 · 서천호  
김정재 · 강대식 · 한기호  
김종양 · 김미애 · 고동진  
조지연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통계청 발표에 따르면, 2014년 112만 700가구(농가인구 275만 1,700명)에 달하던 농가 수는 2023년 99만 9,000가구(농가인구 208만 8,800명)로 10.8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한편 전체 농가인구수 중 60대 이상의 농가인구가 2014년 136만 8,400명에서 2023년 140만 7,600명으로 증가하며 전체 농가인구의 67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50세 미만 농가인구는 2014년 84만 4,200명에서 2023년 36만 9,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됨.

어가수(해수면 기준) 역시 2014년 58,791가구에서 2023년 41,775가구로 10년 새 28.9%가량 감소하였으며, 이에 비례하여 어업인 수도 2014년 141,344명에서 2023년 87,115명으로 급감하는 상황에 이르렀음.

특히 전체 어업인 수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2014년 44%(62,560명)

에서 2023년 65%(56,762명)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촌 지역 역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.

이러한 상황을 일찍이 인식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·추진해 왔지만,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. 이러한 국가 등의 노력에도 후계농어업인이 감소하는 것은 현행법 상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의 육성·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 정책이 부족한 점도 한 요인이므로 후계농어업인의 육성·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.

이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,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,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또는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의 주체인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의 범위를 기존의 “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”에서 “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”으로 확대함(안 제6조 및 제9조).

나. 자경농민 중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고,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함(안 제6조).

다. 자영어민 중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·양식업권, 어선,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함(안 제9조).

라. 조합 및 그 중앙회가 농어업인 중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용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함(안 제10조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072호) 및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10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”을 “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”으로, “100분의 50”을 “100분의 50(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00분의 50”을 “100분의 50(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)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”을 “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”으로, “100분의 50”을 “100분의 50(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)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100분의 50(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

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용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제6조,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



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)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[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(營漁組合法人)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 다만, 중앙회,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·영어자금·영림자금(營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----100분의 50(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)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) ①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----100분의 50(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융자

<p>林資金) 또는 축산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 ② (생략)</p>	<p><u>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100분의 60)을 2025년 12월 31일까지--.</u>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